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6.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미용카드를 도입하고 이·미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미용비 사용성 및 가맹점 가입률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미용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이·미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나. 이·미용비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4. 27.~ 2022. 5. 17.(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노인복지과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어르신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이·미용비는 반기별 4만원 지원 및 당해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미용비는 관내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별표의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이·미용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급하되,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농협은행 하남시지부(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이·미용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이·미용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이·미용카드 사용) ① 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용비 정산) ① 제5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농협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이·미용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이·미용 카드의 수불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미용카드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미용카드 배부대장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이·미용카드의 배부 및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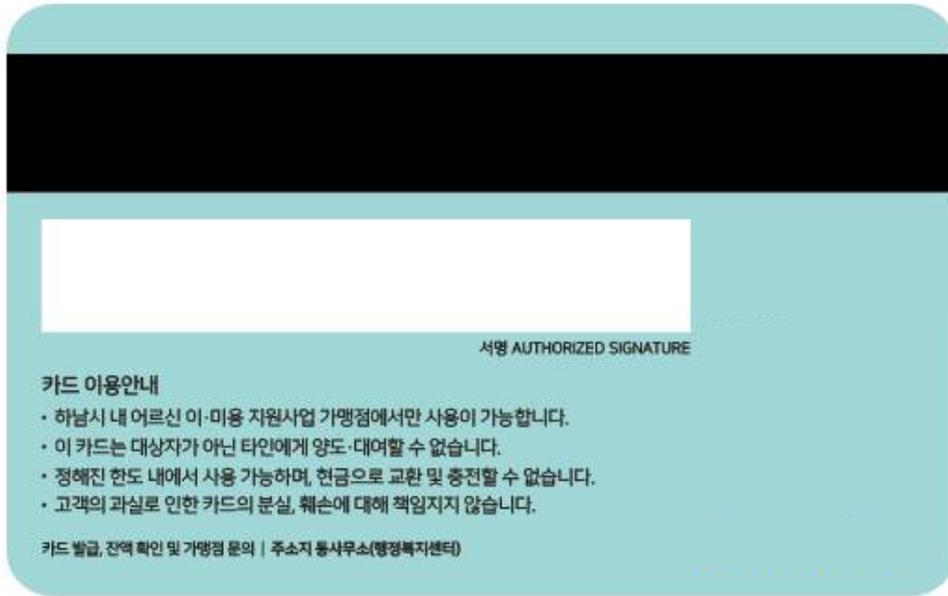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 종 현
	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김 은 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장 이 슬 (790-5719)

[별표]

이·미용 전자 바우처 카드 형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가입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고객 정보	사업자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생년월일	
	예금주		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접수 기관명		담당자	

<유의사항>

1. 본인 외에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본인 확인을 위해 쿠폰 사용 시 신분증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85세 이상 사용가능)
2. 타인이 이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용금액 환수합니다.
3. 초과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해당연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4. 매년 1월 10일 ~ 12월은 31일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1월 1일 ~ 1월 9일은 결산 및 카드 충전을 위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2.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명,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금결제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하남시장 귀하 해당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